

2015

놓치면 안 되는 절세상품 총정리

월간 행복한 노후 만들기

〈 2016년 도입 논의 중인 주요 절세 혜택 〉

행복한 노후 만들기

2015 놓치면 안 되는 절세상품 총정리

- 01 세액공제 상품
- 02 소득공제 상품
- 03 비과세 상품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의 3가지가 있다. 2015년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지 말아야 할 절세상품을 살펴보자. 특히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이 올해로 종료되는 점은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절세상품 3종 세트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vs. 비과세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의 3가지가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의 일몰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절세상품 3종: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
의미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금액을 공제하는 것	과세대상 소득액을 결정할 때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	해당 상품을 운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것
대표 상품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장펀드, 주택청약종합저축	재형저축, 비과세종합저축, 저축성보험,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text{소득금액} - \text{소득공제}) \times \text{세율} = \text{산출된 세액}$$



$$\text{산출된 세액} - \text{세액공제} = \text{실제 세금 납부액}$$

연말정산이란?

원천징수세액 > 실제 납부액 → 환급

원천징수세액 < 실제 납부액 → 추가 납부

주) 원천징수세액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미리 징수했던 세금

연금저축계좌

노후준비와 절세까지 1석 2조, 대표적인 절세상품 (최대 400만원 세액공제)

근로자가 연금저축에 본인명의로 가입하여 해당연도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 산출된 세액에서 공제 (세액공제 예시: 연간 최대 납입금액 400만원 X 13.2% = 52.8만원 감면)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개요

가입대상	별도 가입 제한 없음		
판매처	은행(연금저축 신탁)	생·손보(연금저축보험)	증권사(연금저축펀드)
원금보장 여부	원금보장(실적배당) (5천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원금보장(금리연동) (5천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원금비보장(실적배당) (예금자 보호 X)
납입 및 수령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납입 (연 1,800만원 한도), ·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세제	세액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2% (지방소득세 포함) 단,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인 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공제한도	· 연금저축계좌 연 400만원 한도	
	과세이연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 때까지 과세이연(원천징수X)	
	연금수령시 소득세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확정형 연금 : 만 55~69세 5.5%, 70~79세 4.4%, 80세 이상 3.3% · 종신행 연금 : 만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일시금수령시	16.5% (지방소득세 포함)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년도, 금융감독원 '연금저축길라잡이', (2014)

주1) 舊개인연금저축(1994년 6월~2000년 12월)→연금저축(2001년 1월~2013년 2월)→연금저축계좌(2013년 3월~현재)

주2) 연금계좌에서 55세 이후에 가입일부터 5년 경과하여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연금소득으로 과세

주3) 연금수령 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0%

주4) 종신행 연금은 생명보험회사만 판매

주5) 연금저축은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이 경우 해지가 아닌 계약유지로 간주되어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

세대적격 개인연금의 변천

구분	개인연금 (1994~2000.12)	연금저축 (2001.1~2012.12)	연금저축계좌 (2013.1~)
가입대상	만 20세이상 거주자	만 18세이상 거주자	제한 없음
납입요건	10년이상 분기 300만원 한도	10년이상 분기 300만원 한도	5년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수령요건	5년이상 연단위	5년이상 연단위	10년이상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공제	연 납입금액의 40% 72만원한도 소득공제	400만원한도 소득공제	400만원한도 세액공제
연금수령과세	연금수령시 비과세	원천징수 세율 5.5%	원천징수세율 55~69세: 5.5%, 70~79세: 4.4%, 80세이상: 3.3%
분리과세한도		600만원 (공적연금 소득포함)	1,200만원 (공적연금소득제외)
해지시 과세	소득세	기타소득세 22%	기타소득세 16.5%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3~5%)
부득이한 사유		600만원 (공적연금 소득포함)	가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요양, 천재지변, 파산, 해외이주 등
해지 가산세	5년이내 해지시 납입금액의 4%, 연 7만2천원 한도내 추징	5년이내 해지 시 해지 가산세 2.2%	없음
계좌 내 금액의 인출순서		600만원 (공적연금 소득포함)	① 과세제외금액 ② 이연퇴직소득 ③기타금액(세액공제액, 운용소득) 순으로 인출
적용법률	조특법 제 86조	조특법 86조 2	소득세법

[자료] 금융감독원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금융상품의 세제 혜택은 크게 세액공제, 소득공제, 비과세의 3가지가 있으며,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퇴직연금 납입한도 확대, 소장펀드(소득공제 장기펀드)와 재형저축의 일몰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DC형 퇴직연금, 개인형퇴직연금(IRP)] 세액공제 개요					
세제혜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한 부담금에 대해 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에 납입하는 금액에 연 300만원 추가 한도를 부여하여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 연금저축 불입액이 없는 경우, 퇴직연금 추가납으로만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퇴직연금 가입자별 추가납 여부	<pre> graph LR A[퇴직연금] --> B[DB형] A --> C[DC형] B --> D[IRP 개설] C --> E[추가납입] C --> F[IRP 개설] </pre>			*퇴직연금제도 미가입 사업장 근로자는 불가능	
연금계좌 납입액에 따른 절세금액 예시	퇴직연금	연금저축	공제금액	절세액 (공제금액×13.2%)	
	700만원	0원	700만원 (퇴직연금 전액)	92만 4천원	
	300만원	400만원	700만원 (퇴직연금 300+연금저축 400)	92만 4천원	
	200만원	500만원	600만원 (퇴직연금 200+연금저축 400)	79만 2천원	
	0원	700만원	400만원 (연금저축 400)	52만 8천원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년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사이트

주)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 16.5%) 적용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장기 펀드(최대 240만원 소득공제)

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장기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한 날로부터 10년간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2014년 3월 17일 판매가 개시되었으며, 201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상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소득공제 장기펀드) 개요

가입대상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 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합산신고대상자 및 일용직 근로자 제외)
펀드요건	자산총액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장기적립식 펀드로서 연 납입한도 600만원 계약기간 10년 이상, 중도에 원금 인출이 없을 것
세제혜택	저축 연 납입액의 40% 소득공제(연 240만원 한도*) (가입 후 해당과세기간 총급여액이 8천만원 초과자는 소득공제 불가)
중도해지	5년 이내 해지 시 : 해지추징세액 6.6%(지방소득세 포함) 추징 10년 이내 해지 시 : 해지추징세액 미추징
가입시한	2015.12.31까지 가입가능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년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사이트
주)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 16.5%) 적용

소득공제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납입한도 240만원 (최대 96만원 소득공제)

국민주택 등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는 연간 납입금액 240만원 한도에서 40%까지 근로소득공제 가능 (예: 240만원×40%=96만원 소득공제)

내 집 마련을 위한 목돈(매월 2~50만원, 일시금 1,500만원)을 모으면서 공제도 받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음.

주택청약종합저축 개요 및 소득공제 혜택

가입대상	개인 또는 외국인 거주자 /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 * 2015년 9월 1일부터 기존 청약제도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가 주택청약 종합저축으로 통합되었음.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판매처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약정이율(年)	1개월 이내:무이자 / 1개월 초과~1년 미만:1.2% / 1년 이상~2년 미만:1.7%, 2년 이상 2.2%	
소득공제	대상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 (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단,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 제출해야 함.
	한도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 (96만원 한도)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년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사이트

주)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 16.5%) 적용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 저축)

2015년
종료

서민층의 재형저축 의무가입기간 요건 완화 (7년 → 3년)

이자·배당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과한 금융상품으로,

은행, 보험, 증권사에서 예금, 증권, 펀드, 증권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며, 2015년 12월로 가입 종료 예정

재형저축(일반형, 서민형) 개요

가입대상	1) 일반재형저축 : 직전 과세기간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 · 근로자는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사업자는 종합소득금액 3천 5백만원 이하 2) 서민형재형저축 (2015.3 도입) : · 소득형: 총급여액 2천 5백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1천 6백만원 이하 사업자 · 청년형: 중소기업 재직 고졸 청년근로자(15~29세) (소득기준은 일반재형저축과 동일)			
세제지원	의무가입기간 계약 유지 시 이자, 배당소득세 15.4%(지방소득세 포함) 면제, 농특세 1.4%만 부과			
적립액	분기별 3백만원(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가능, 가입한도는 모든 금융기관 합산 기준)			
의무 가입기간	일반재형저축 : 7년 / 서민형재형저축 : 3년 단, 1회에 한해 3년 이내 범위에서 1년 단위로 연장 가능(최대 10년)			
적용기한	2015.12.31까지 가입분			
재형저축 상품비교	구분	적금	보험	펀드
	원금보장	보장 (5천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보장 (5천만원 한도 예금자보호)	비보장 (예금자보호 X)
	수익률	혼합형*: 약 3.4% ~ 4.3% 고정형: 약 2.6% ~ 3.25%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
* 혼합형: 최초 3년 또는 4년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년도, 국세법령정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비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고령자·취약계층을 위한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 통합(비과세)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생계형저축과 세금우대종합저축을 2015년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해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고 세제지원 강화

생계형저축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흡수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vs. 비과세종합저축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가입 자격	60세 이상 거주자, 장애인, 상이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만 20세 이상 거주자, 생계형저축 가입대상자
세제 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9.5%분리과세 (소득세 9%, 농특세 0.5%)
한도	1인당 3,000만원	· 20세 이상: 1천만원 · 생계형저축 대상: 3천만원
만기	별도 만기 없음	개설 기준 1년 이상 지정가능
가입만료	2014.12.31.	2014.12.31.



비과세종합저축 (생계형저축이 명칭 변경)

가입 자격	61세 이상인 자(2015년 기준)*, 장애인, 독립유공자, 상이자, 기초생활수급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증환자 * 단,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매년 1세씩 상향 조정(2016년 62세, ... 2019년 65세)
세제 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한도	1인당 5,000만원*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 생계형저축 한도를 포함한 통합한도로 설정
만기	별도 만기 없음 (가입기간 관계없이 완전비과세)
가입만료	2015.1.1.~2019.12.31.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

장기저축성 보험의 만기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일정요건 충족 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	<p>55세이후 수령하는 종신형 연금계약</p> <p>YES → 비과세</p> <p>NO ↓</p> <p>보험기간 10년 이상 유지</p> <p>YES → 납입기간 5년 이상인 월적납식 계약 → YES → 비과세</p> <p>NO ↓</p> <p>납입할 보험료의 합계가 2억원 이내 (기존보유계약 합산) → YES → 비과세</p> <p>NO ↓</p> <p>과세</p>
	<p>* 일반적으로 보험기간이 10년 이상 유지되는 저축성보험의 경우 대부분 비과세 해당</p>
요건 미충족시	만기보험금(해지환급금) 지급시 이자소득세(15.4%)가 원천징수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각년도 금융감독원 퇴직연금종합안내 사이트
주) 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세액공제율 15% (지방세 포함 16.5%)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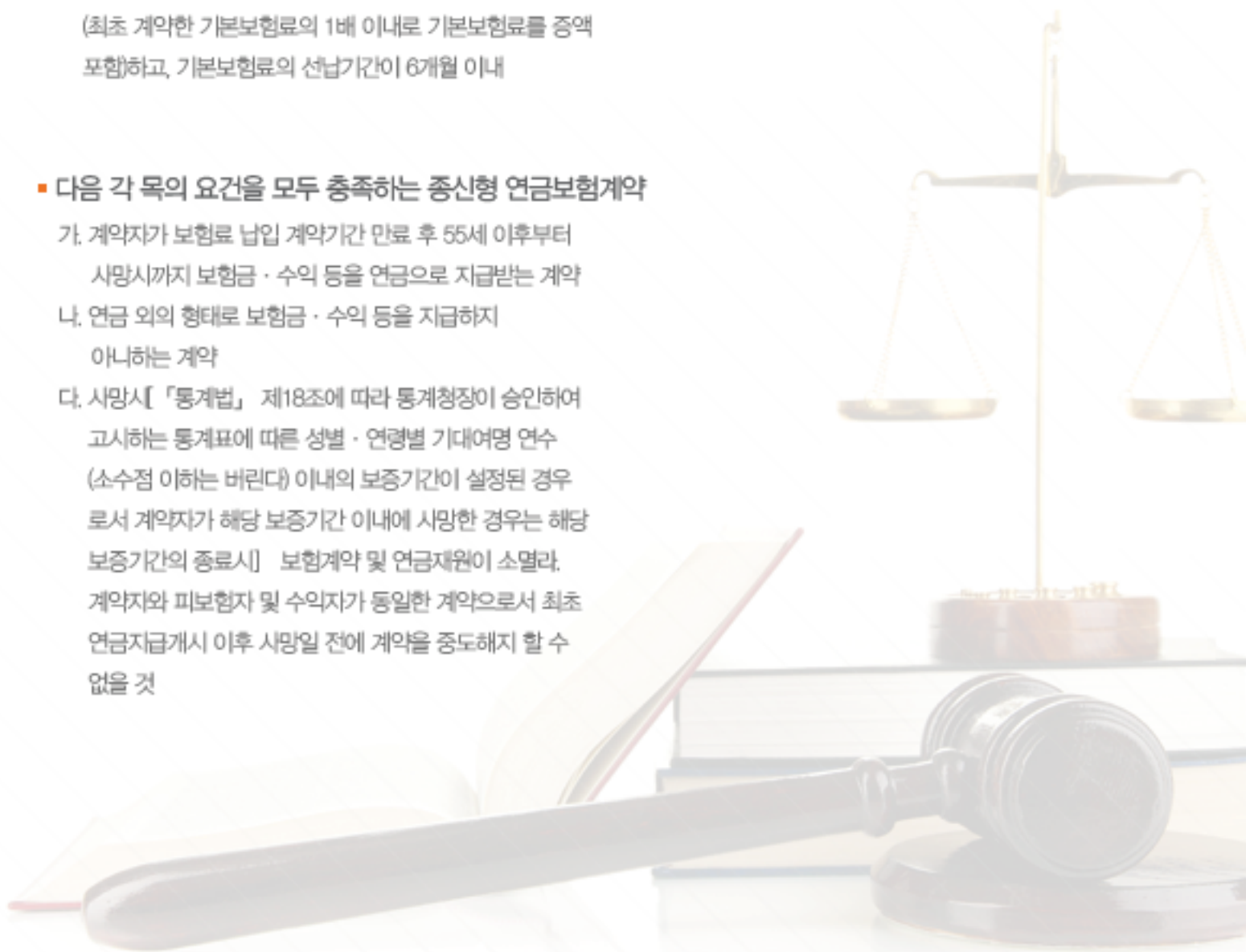
장기저축성 보험 비과세 요건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 1항

- 계약자 1명당 납입할 보험료 합계액이 2억원 이하인 저축성보험계약으로서 최초납입일~만기일(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계약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가. 최초납입일~만기일(중도해지일)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나. 최초납입일로부터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인 월적립식 계약
 - 다. 최초납입일부터 매월 납입하는 기본보험료가 균등(최초 계약한 기본보험료의 1배 이내로 기본보험료를 증액 포함)하고, 기본보험료의 선납기간이 6개월 이내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종신형 연금보험계약
 - 가.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 계약기간 만료 후 55세 이후부터 사망시까지 보험금·수익 등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계약
 - 나.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수익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계약
 - 다. 사망시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이내의 보증기간이 설정된 경우로서 계약자가 해당 보증기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는 해당 보증기간의 종료시 보험계약 및 연금재원이 소멸라. 계약자와 피보험자 및 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으로서 최초 연금지급개시 이후 사망일 전에 계약을 중도해지 할 수 없을 것



비과세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

소액 출자금으로 세제혜택 가입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비과세 상품

농어민이 아니어도 소액의 출자금을 내면 준조합원 자격으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예탁금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개설할 수 있고 중도 해지 등에 따른 불이익이 없어 부담 없이 활용 가능

상호금융 예탁금 ·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개요

가입대상	20세 이상의 조합원 (농어민) 또는 출자금을 낸 준조합원 (일반인)			
불입한도	예탁금: 1인당 3천만원, 출자금: 1인당 1천만원			
세제지원	* 예탁금: 2015년까지 이자소득 비과세 (농특세 1.4%만 부과)			
	※ 비과세 연장여부는 현재 논의 중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이자소득세	비과세	5.0%	9.0%
	농특세	1.4%	0.9%	0.5%
합계	1.4%	5.9%	9.5%	
*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단, 예금자보호)				
저축방식	예탁금 : 요구불 · 거치 · 적립식 · 정기 등 다양, 출자금 : 출자 후 배당금 발생시 지급			
판매처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외의 5개 상호금융기관 限 기관에 따라 연고지나 직장주소 지역만으로 개설이 제한될 수 있음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각년도, 기획재정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2015.9

행복한 노후 만들기

2016 도입 논의 중인 주요 절세 혜택

(개정안으로 국회 통과가 되기 전 변경될 수 있음)

- 0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 02 펀드 과세체계 개정
- 03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 04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정부가 2016년 새롭게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펀드 과세체계 개정,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등이 있다.

논의 중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저금리 시대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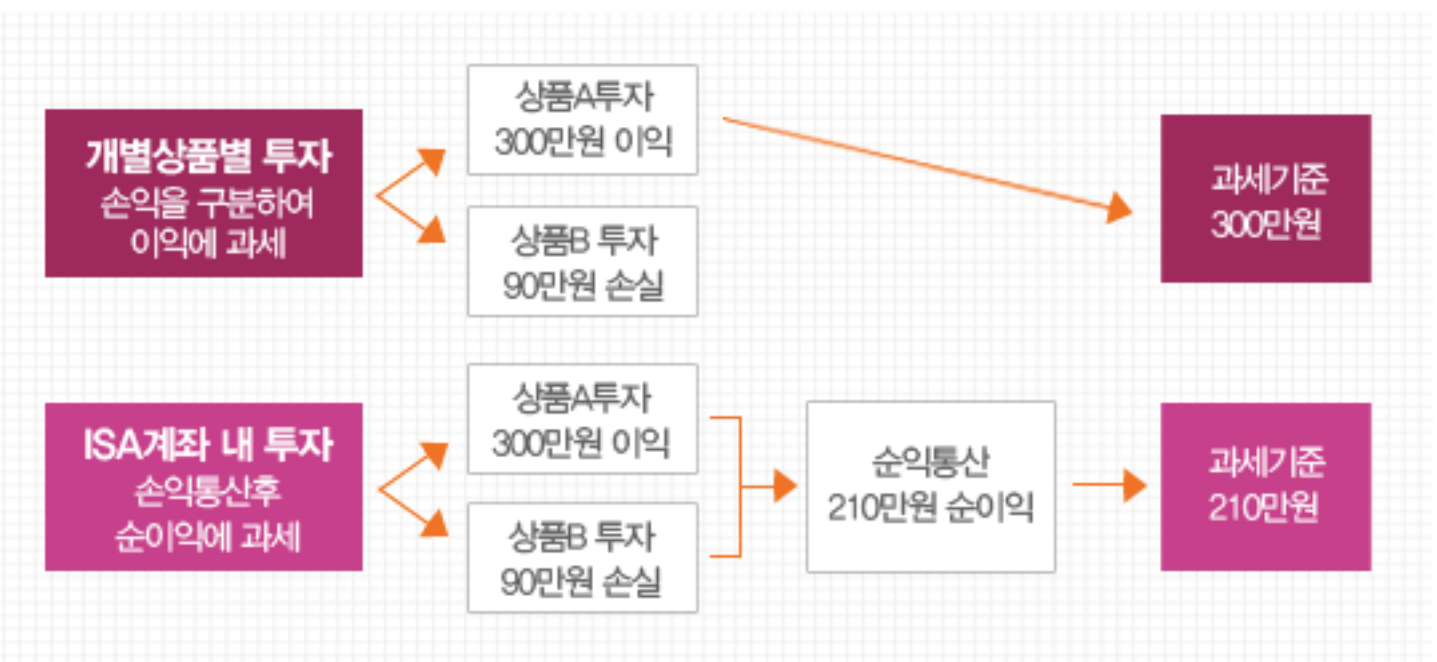
근로자·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 만기 인출 시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해 세제 지원

ISA의 개요와 과세기준 산정방식

가입대상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제외)
납입한도	연간 2천만원
의무가입 기간	5년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3년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세제지원	계좌 내 손익을 통산, 만기 인출 시 ·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 초과분은 9% 분리과세
적용기한	2018.12.31까지 가입분

[자료] 국세청 '개정세법' 각년도,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5년도 조세특례 심층평가', 2015.9

Q.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준 금액은?



재형저축, 소장펀드 vs. ISA

올해 폐지되는 재형저축 · 소장펀드의 대체상품격, 절세효과 축소 가능성

구분	재형저축	소장펀드	ISA
가입자격	총급여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 거주자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납입한도	분기 300만원 (연 1,200만원)	연 600만원	연 2,000만원
편입상품	예금, 펀드, 보험	펀드	예금, 펀드, 파생결합증권
손익통산	해당없음(상품별)	해당없음(상품별)	계좌 내 손익통산
상품간 교체	불가	불가	가능
세제혜택	비과세	납입액 40% 소득공제	인출시 순소득 기준 - 200만원 限 : 비과세 - 200만원 초과: 분리과세 9% (지방세 포함 9.9%)
기타	만기 7년 이상 (서민형 3년), 추가 3년 연장 가능 (2015년 일몰)	만기 10년 이상 (2015년 일몰)	5년 /청년 또는 일정소득 이하 가입자*는 3년 * 총급여 25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1,600만원 이하 사업자

[자료] 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논의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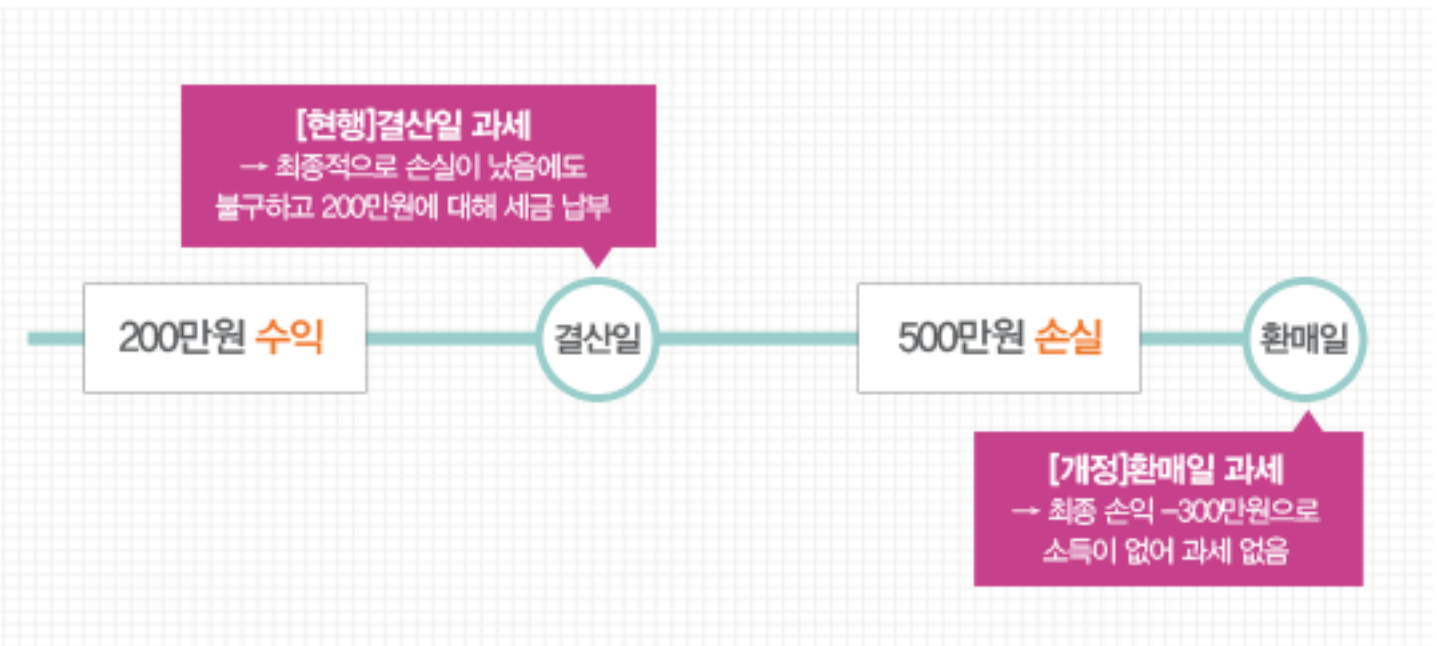
(해외)펀드 과세체계 개정

(해외)펀드의 매매·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시점을 환매시점으로 변경

현행 제도는 (해외)펀드에 가입한 후 환매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년 펀드결산을 통해 이익 발생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 왔으나, 개정안을 통해 (해외)펀드에 포함된 주식 등의 매매·평가 차익을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해 환매할 때 일괄적으로 과세(단, 이자나 배당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매년 결산)

(해외)펀드 과세체계 개정안 개요

	현행	개정안
결산·분배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펀드의 이익은 연 1회 이상 결산·분배
	단, 펀드의 평가이익은 결산·분배하지 않고 유보 가능	단, 유보가능 이익에 펀드의 매매이익 추가
과세방법	(분배시) 매년 분배된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환매시) 환매시 분배받은 이익금을 배당소득으로 과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실물자산 등의 매매·평가차익은 매년 과세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시 일괄과세 단, 이자·배당은 매년 분배하여 과세



논의 중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신설

해외주식 매매 및 평가, 환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혜택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으로 투자하는 펀드를 대상으로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차익(환차익 포함)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적용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개요

가입기간	22016.1.1~2017.12.31 (2년간)
가입대상	대한민국 거주자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가입방식	전용계좌를 통해 해외주식형 펀드 매수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 이상 투자하는 신규펀드 (단,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기존 펀드에 전용계좌를 통해 신규 투자하는 경우 포함)
세제혜택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차익(환차익 포함) 비과세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환차익은 비과세, 배당소득세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
세제혜택 기간	가입일로부터 10년

[자료] 기획재정부 '2015 세법개정안', 금융투자협회

논의 중

상속세 및 증여세 개정

부모 10년 모신 무주택 자녀, 5억 주택 상속세 '0원' 추진

고령화 진전과 경제위기로 인한 가족 해체가 빈번해, 동거주택 상속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여야간 잠정 합의를 보았으며,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 예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항목	현행	개정안
동거자녀 주택 상속공제율	5억원까지 40%	5억원까지 100%
상속세 자녀·연로자 공제	3,000만원	5,000만원
공제대상 미성년자 기준	20세	19세
공제대상 연로자 기준	60세	65세

집값(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면 상속세 0원.
단, 동거주택으로 인정받으려면 10년간 같은 가구에 거주해야 하며, 부모는 1가구 1주택, 자녀는 상속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함.

[자료] 기획재정위원회 언론기사 모음